

#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1271
-----------	------

2020년 2월 26일  
교 육 위 원 회

### I .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2월 5일, 최 선 의원

2. 회부일자 : 2020년 2월 12일

3. 상정일자

○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0년 2월 26일 상정, 원안가결)

### II .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최 선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스쿨미투(#MeToo) 및 학교 내 여성혐오, 성차별 발언 등의 이유로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2018.2.5.)’ 청원 등 학교 내 성평등 교육 강화 및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

○ 「양성평등기본법」의 제14조, 제18조, 제29~31조, 제36~37조 등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 공동체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의 성평등 환경 조성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실천함.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동등한 성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성평등 교육환경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3조).
- 나.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활성화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6~8조).
- 마. 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하여 교원대상 자격 및 직무연수 편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바. 성평등 관점의 성차별·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사.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을 통하여 상호협력적 성평등 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0년 2월 5일 최 선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271호로 발의되어 2020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교육 현장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없애고 성평등 교육을 통한 교육당사자의 성인지 감수성 및 민주시민의식 향상을 통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청소년 세대에서 발견되는 성평등 의식의 격차와 갈등이 학교 내 여성혐오로 이어지면서 자라나는 세대에서의 균형적인 성평등 인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sup>1)</sup>

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스쿨미투 문제는 교사와 직원 등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학교 구성원이 성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성인지적인 사고와 태도를 습득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켜 주었습니다.

- 또한, 청와대 게시판에 초·중·고에서 페미니즘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게재되면서 한 달 만에 21만 명 이상이 해당 게시물에 서명할 정도로 성평등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교육부는 통합적인 인권교육의 차원에서 인간 존중 및 남녀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양성평등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양성평등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도 서울교육공동체의 성인지력 향상 및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성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추진체계 구축, 콘텐츠 개발 및 성인지 연수 확대, 성평등 교육 내실화 및 협력체계 강화를 3대 핵심영역으로 지정하고 주요과제를

---

1) 보도자료: 학교 안 혐오현상 싹트는 어떻게 대책은 또 뭘까? (연합뉴스 2019.12.05.)  
‘반페미니즘’과 교실의 여성혐오(한겨레, 2019.4.28.)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런 면에서 동 조례안은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성평등위원회의 구성·운영, 성차별·성폭력 근절 대책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성평등 교육환경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성평등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는 성평등 의식제고 및 문화조성을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성차별·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 면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실무 등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의견(안 제5조)

- 안 제5조제1항은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제2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

고 있습니다.

- 이러한 동 계획수립과 관련된 규정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적 사항을 포함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교육정책,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까지 총 망라함으로써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성평등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안 제5조제2항제4호의 성평등 관점의 성차별·성폭력 방지 및 근절 계획과 제8호의 성인지 예산 편성 및 추진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은 학생인권, 학교폭력 근절 대책, 예산 편성 업무와 중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 부서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3) 성평등 의식 제고 및 문화 조성에 대한 의견(안 제9조)

-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과정 운영 시 성평등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성평등 관련 연수 및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성평등’ 주제의 교과목은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필수과목으로 운영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차별·성폭력 교육이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되어 ‘학교폭력 예방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성평등’ 관련 연수 및 교육훈련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보급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표-1] 2019년 성평등 관련 자격연수·교육훈련·직무연수 운영 현황

구분		교육과정 명	시간	비고
자격연수	초등	교장 연수	성희롱, 성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2
		교감 연수	성희롱의 실태와 예방미투, 젠더교육의 이해	2
		1정 연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
	중등	교장 연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2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강화 교육	2
		교감 연수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교육	3
		1정 연수	학교폭력(성폭력, 성희롱)예방, 생활지도	3
교육훈련	본청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2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2	
	교육연수원	일과 가정의 밸런스 찾기	2	
		저출산, 고령화 해법을 위한 인구교육	2	
직무연수		인권 및 성평등 현장지원단 연수	30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 학교 만들기	1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의 제정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817, 2020.2.13.).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수정안의 요지 : 없음.**

**Ⅶ.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교육 현장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없애고, 성평등 교육을 통한 교육당사자의 성인지 감수성 및 민주시민의식 향상을 통해 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평등 교육"이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성평등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여 성적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며, 성평등을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3. "성평등 교육환경"이란 교육당사자가 교육을 하거나 받고 있는 주위의 조건 또는 사회적 상황이 성평등한 것을 뜻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 가. 교육 공간 내의 시설 이용과 배치, 디자인 등의 물리적 환경
  - 나. 교육당사자의 인구학적 특징 및 사회·경제적 배경, 대표자 구성 등의 인적 환경
  - 다. 과업을 처리하는 방식, 관행, 주요 원칙 및 조직구조 등의 조직적 환경
  - 라. 교육과정 및 생활교육 등의 제도적 환경
  - 마. 가목부터 라목이 어우러져 형성하는 일상의 문화, 풍토 등의 구성적 환경
4. "교육당사자"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2. 제1호의 학교와 유치원에 학적을 둔 학생
3.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
4.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제4조(교육감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당사자에게 성평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며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의 수립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그 운영에 있어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성평등 관점에 따른 인권 보호 및 성문화 조성 등 성평등 교육·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평등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제5조(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추진 방안
2.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 수립시 성인지적 관점 반영
3.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계획
4. 성평등 관점의 성차별·성폭력 방지 및 근절 계획
5. 성평등 교육자료 및 연구자료 개발·보급
6. 지역사회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향
8. 성인지 예산 편성 및 추진 결과 보고
9. 그 밖에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성평등위원회)** ① 교육감은 지속가능한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성차별·성폭력 방지 및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
3.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성평등·교육정책·행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2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평등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 전담부서의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경우
5.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는 효율적인 안건 심의 등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성평등 의식제고 및 문화 조성)** ①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자격연수에서 성평등 교과목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및 소속기관 직원의 교육훈련에 성평등 관련 직무연수과정이 운영되거나 교과목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학생 및 보호자 대상으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성평등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지원하고, 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조직문화 개선 및 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성차별·성폭력의 금지 등)** 교육감은 학생과 학교 및 소속기관 직원의 성차별·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교육, 생활교육,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평등한 문화 확립
2. 성평등 및 성폭력 사안처리 관련 업무 담당자의 성인지 교육 강화
3. 성차별·성폭력 발생시 불이익한 처분 등으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및 피해자의 회복 및 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제11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교육감은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